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3월 24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9년 3월 24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9년 5월 18일) 상정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윤병국 의원)

가. 제안이유

- 「학교급식법」 제5조제3항 내지 제5항 및 제8조제4항의 시행을 위하여 시에 두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구성·설치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 현행 학교급식 체계의 전반적인 개선과 지원을 통하여 학교급식의 질을 제고하고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를 식품비 뿐만아니라 운영비와 시설·설비비로 하고, 우수 식재료를 구체적으로 명시(안 제2조)
- 시장에게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 하여 시행하도록 규정(안 제3조)

- 학교급식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그 지원규모와 내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안 제4조)
- 학교급식 지원 대상 및 신청방법, 지원대상자의 의무를 정함(안 제5조 내지 제7조)
-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8조 및 제9조)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 학교급식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교부결정 변경 또는 취소나 회수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인해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지자체가 없는데 조례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가?	○ 경기도에서 내년도에 센터를 설립할 계획으로 있으며, 여러 가지 제반여건을 보아가며 유통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명시함.
○ 매년 학교급식 계획을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장이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규정한 의미는?	○ 이 조례는 무상급식 등 전반적인 학교급식을 지원하는 조례가 아니며,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지원체계를 갖추고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시의 역할과 방안을 민·간이 함께 협의해 보고자 하는 것이 우선 목표임.

질 의 내 용	답 변 내 용
○ 심의위원회 구성원중 학부모단체, 교사단체, 시민사회단체, 생산자단체 추천인으로 되어 있어 그 범위가 불명확한데?	○ 타 시·군 사례를 보며 운영하면 될 것이며, 표준안과 경기도 조례 등을 비교하여 정하였음. (이상 윤병국 의원)
○ 부천시 관내에서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하고 있는 학생수와 지원되고 있는 예산은?	○ 학기중에는 약 8,700여명으로 시에서 7억, 교육청에서 27억 정도 가 지원되고, 방학중에는 약 2,000 ~ 4,000명으로 도·시비로 26억이 지원되고 있음.
○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에 대한 집행부의 견해는?	○ 시의 무거운 책임임. 어렵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종합적인 의견은?	○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할 때 시장에게 너무 무거운 책임을 주는 조례이며, 교육경비 지원조례에 포함하여 지원도 가능할 것이라 사료됨. (이상 총무과장)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조례는 실효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급식경비의 범위와 지원대상, 종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여 수정의결하는 것이 타당함.

나. 찬성토론

- 우리시와 의정부시를 제외한 경기도 29개 시·군은 물론 전국 181개이상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심도있는 토론의 장을 열어보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함.

5. 심사결과 : 『수정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수정안

의안 번호	관련 제388호
의결 년월일	2009. 5. 21. (제152회)

제안년월일 : 2009. 5. 18.

제안자 : 행정복지위원장

1. 수정이유

- 조례는 실효성 확보가 전제되어야 하므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급식경비의 범위와 지원대상, 종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전반적인 내용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것으로 수정함.

2. 수정 주요골자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1조, 제2조, 제9조, 제10조)
- 용어의 정의중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대상학교로, ‘급식경비’는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로 그 범위를 한정함.(안 제2조)
-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시장의 의무규정을 삭제함. (안 제3조)
- 학교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을 학교급식법에 제4조에서 정한 교육기관으로 한정함.(안 제5조)
- 지원대상 학교의 급식소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안 제7조)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수정안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 제2조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수정한다.

안 제2조 1호 중 ‘「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대하여’를 ‘법 제4조에 따른 대상 학교에 대하여’로 수정한다.

안 제2조 2호 중 ““급식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 등에 필요한’을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에 필요한’으로 수정한다.

안 제2조 3호 중 ‘라 함은’을 ‘란’으로 수정한다.

안 제2조 3호 제나목 중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생산물로 지역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친환경농산물’을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로 수정한다.

안 제2조 3호 제라목 중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식품산업진흥법」’으로 수정한다.

안 제2조 3호 마목 중 「수산물품질관리법」을 「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수정한다.

안 제2조 3호 바목을 삭제한다.

안 제2조 4호를 삭제한다.

안 제3조 1항 중 항번호를 삭제한다.

안 제3조 2호를 삭제한다.

안 제4조 1항 중 「제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조에 따른」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를 「교육경비의 범위에서」로 수정한다.

안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부천시에 소재하는 법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한다.

안 제6조 1항 중 「지원을 받고자하는 급식학교는 다음 각 호의」를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로 하고, 「단, 보육시설과 고등학교는」을 「다만, 고등학교는」으로 수정한다.

안 제6조 1항 4호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안 제7조 1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안 제7조 2항 중 ‘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을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으로 하고, ‘이를 집계하여’를 ‘이를’으로 수정한다.

안 제7조 4항을 삭제한다.

안 제8조 2항 중 ‘15인’을 ‘15명’으로 하고, ‘각회의’를 ‘각 회의’로 수정한다.

안 제7조 3항 중 ‘위원회에서’를 ‘심의위원회에서’로 수정한다.

안 제9조 중 ‘각회의’를 ‘각 회의’로 수정한다.

안 제9조 1호를 삭제한다.

안 제9조 2호를 1호로 하고,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을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 규모와 내역’으로 수정한다.

안 제9조 3호를 2호로 수정한다.

안 제9조 4호를 3호로 수정한다.

안 제9조 5호를 4호로 하고, ‘기타’를 ‘그 밖에’로 수정한다.

안 제10조를 삭제한다.

안 제11조를 제10조로 하고, 조명 중 ‘지도·감독’을 ‘지도·감독 및 정보공개’로 수정한다.

안 제11조 1항 중 ‘시장과 위원회는’을 ‘시장은’으로 수정한다.

안 제12조를 제11조로 수정한다.

안 제13조를 제12조로 수정한다.

위의 수정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제정안과 같음.』

제 정 안	수 정 안
<p>1. (생략) 2. (생략) 3. (생략) 4. <u>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 지원을 신청 할 경우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 자 하는 금액</u> 5. (생략) ② (생략) ③ (생략)</p>	<p>1. (제정안과 같음) 2. (제정안과 같음) 3. (제정안과 같음) 4. <u>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u> 5. (제정안과 같음) ② (제정안과 같음) ③ (제정안과 같음)</p>
<p>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u>지원금을 교부받은 급식학교 등 지원대상 시설의 장은 지원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 하는데 사 용하여야 한다.</u> ② <u>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제1 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집계하여 시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u> ③ <u>지원대상 학교 및 시설의 장은 생산자 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 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 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④ <u>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의 장은 교사, 학 부모, 영양사, 학생대표 등을 포함 한 급 식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내실 있 는 급식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u></p>	<p>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u>지원금을 교 부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 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u> ② <u>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 - - - - 이를 - - - - -</u> ③ <u>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 - - - -</u> (삭 제)</p>
<p>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생략) ② <u>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u> 1. -9. (생략) ③ <u>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시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u> ④ -⑥ (생략)</p>	<p>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 영) ① (제정안과 같음) ② - - - - - 15명 - - - - - 각 호의 - - - - - 1. -9. (제정안과 같음) ③ - - - - - <u>심의위원회에서</u> - - - - - ④ -⑥ (제정안과 같음)</p>

제 정 안	수 정 안
<p>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와 시설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3. 급식비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4.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5. 기타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이 요구한 사항 	<p>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 - - - - - - -- <u>각 호의</u> - - - - - . (삭 제)</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 규모와 내역 2. - - - - - 3. - - - - - 4. 그 밖에 - - - - -
<p>제10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 급식에 지원되는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 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 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p> <p>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학교급식 실태조사 2. 생산자 및 학교에 대한 지원 및 범위 선정 3. 생산자 조직과 계약생산에 따른 생산 조정 및 품목 선정 4. 유통 및 공급관리 5. 부천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와 교육청간의 급식업무 협의 6. 교육청과 연계한 급식관련 교육 및 홍보 7. 기타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 <p>③ 시장은 필요시 지원센터 업무와 시설의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p> <p>④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삭 제)</p>

제 정 안	수 정 안
<p>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과 위원회는 필요시 지원대상자의 급식지원금과 관련된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10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시장은 -.</p> <p>② - ④ (제정안과 같음)</p>
<p>제12조(일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p>	<p>제11조(일비 등) -</p>
<p>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12조(시행규칙) - - - - - - - - - -.</p>

[수정안 포함]

부천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 및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와 안전하고 우수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대상 학교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3. “우수 식재료”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 가.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인증 농산물

나.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친환경농산물

다. 「축산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

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

마.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품질 인증품

바.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생산 또는 유통에 직접 관여하거나 우선 구매를 촉진·권고·권장·요청하는 농·축·수산물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한 우수 식재료의 생산 및 공급방안
2. 부천시내 농·축·수산업 생산자 및 생산자 단체의 참여방안
3. 학교급식 지원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

제4조(경비의 지원)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교급식 경비 중 일부를 교육경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② 학교급식 경비의 지원규모와 내역은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부천시에 소재하는 법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① 학교급식 경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부천교육청을 통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는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급식경비 및 우수 식재료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 계획

② 지원신청 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금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학교급식의 질을 개선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지원금 사용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시 홈페이지에 정기적

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③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생산자단체와 계약재배 또는 직거래 등을 통하여 안전하고 품질이 우수한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1. 부시장 및 관련 국장
2. 부천교육청 관련국장
3. 학부모단체 추천인
4. 교사단체 추천인
5. 시민사회단체 추천인
6. 생산자단체 추천인
7. 식품영양 관련 전문가
8. 부천시의회 의원
9. 그 밖에 학교급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하

고, 간사는 시 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심의위원회는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각 분야별 실무자가 참여하는 학교급식지원심의 실무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 및 실무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에 대한 지원규모와 내역
2. 급식비 지원 대상 및 지원규모에 대한 내역
3. 영양 개선 및 식생활 습관의 개선 등을 위한 시범사업의 실시
4.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 및 개선에 관하여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지도·감독 및 정보공개) ① 시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의 급식지원금과 관련된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 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

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학교급식 경비 지원금의 집행에 관한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학교급식지원 현황 및 지역의 농·축·수산물 생산 및 공급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투명하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일비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일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